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73
------	-----

2019. 8.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8월 7일, 이호대 의원 외 12명

나.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30.)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이호대 의원)

1. 제안이유

가.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6조의2).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존속기한 명시를 통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음.

나.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 현황

- 서울시는 2016년 지방정부 최초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민주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등 선도적인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설립 근거를 둔 경제민주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경제민주화 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16년 9월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 중임.
 -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생 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과 중소기업 강화를 위한 공정 분야, 노동 이사제와 생활임금 등 노동 분야 등 3개의 분과 회의를 운영 중임.

- 양극화·고용불안·고령화 등의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균등한 기회, 공정한 경쟁, 공평한 소득 분배 등 경제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구현하는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운영현황〉

- 총 35회 (전체회의 5회, 분과회의 30회)

연 도	회 의 내 역
2016년	▶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6회
2017년	▶ 전체회의 2회/ 분과회의 9회
2018년	▶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12회
2019년	▶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3회

다.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자문기관(위원회)을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¹⁾,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조례에 명시하는 존속기한을 최소 2년으로 정하고 있음²⁾.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조례

-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년(2016.9~2018.9)으로 명시하였으나, 2018년 9월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비 없이 계속 위원회를 존치해 왔음.
- 존속기한 만료 후, 2018년 분과회의 2회, 2019년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3회 등 총 6회의 회의가 개최되었음.

회의일자	회 의	회의내용
2018-11-28	상생분과위원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8건
2018-11-28	공정분과위원회	소셜프랜차이즈 육성 등 11건
2019-02-12	상생분과위원회	도시재생에 따른 영세 임차상인 지원 등 4건
2019-02-12	공정분과위원회	건설분야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등 6건
2019-02-12	노동분과위원회	노동이사제 조기안착 및 전국확산관행 근절 등
2019-03-19	전체회의	중앙부처의 협력사항 및 법제도 개선사항 2019년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 이로 인해 존속기한 경과 이후의 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의 법적 효력, 위원 자격, 수당 지급 등에 있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었음.
- 위원회 존립 효력을 상실할 때까지 조례를 미개정한 것은 명백한 행정 실수라 할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제11조제2항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한편 서울시 위원회 현황 조사(2019.6.24.)에 따르면, 2015년 3월 이후³⁾ 설치된 42개 위원회⁴⁾ 중 12개의 위원회만이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30개 위원회는 존속기한 없이 운영되고 있음.

〈서울시 위원회 현황 조사(민관협력담당관, 2019.6.24.)〉

(조사대상) 2015년 3월 이후 설치된 42개 위원회
 (조사내용) 각 실국 소관 위원회 존속기한 규정 유무, 기한 도과 여부 등
 (조사결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위원회 : 42개 중 30개 위원회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으나 기한이 도과된 위원회
 - 일자리위원회 (2년, 2017년 8월 만료)
 - 경제민주화위원회 (2년, 2018년 9월 만료)

- 이와 같이 위원회 소관 부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거나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행 법령의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를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보완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부칙 < 제3414호, 2015. 3.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민관협력담당관의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4)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 제외한 존속기한 명시 대상 위원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11명, 전원찬성)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호대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73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이호대, 김종무, 강동길,
김 경, 김상훈, 전병주,
박순규, 김정태, 이정인,
권영희, 김경우, 김화숙,
김소양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경제민주화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제민주화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6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제6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